

[변경 대비표]

1. 펀드명 : 우리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(채권)

2. 효력발생일 : 2026.07.24

3. 정정사유

-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일부 삭제
-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-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(이지자산평가 추가)

<규약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일부 삭제	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2. 채권(단기사채는 제외한다)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 미만으로 한다. 다만, 어음 및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	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2. <삭제>어음 및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

<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기준일자 변경 에 따른 업데 이트	[요약정보] 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-	[요약정보] 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기준일자 변경 에 따른 업데 이트	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제3부. 집합 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, 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-	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제3부. 집합 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, 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일부 삭제	제2부. 8. 가. 투자대상 ②채권(단기사채 제외) : 50%미만, 다만, 어음 및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60%이상으로 합니다.	제2부. 8. 가. 투자대상 ②어음 및 채권 : 60%이상
채권평가회사 에 관한 사항 (이지자산평가	제4부. 6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<추가>	제4부. 6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<이지자산평가>

추가)		
-----	--	--

<간이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기준일자 변경 에 따른 업데이트	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-	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